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2. 16.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박홍서 지역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 해당조례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본 폐지 조례 안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안을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는 매향리 생태공원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범의원 대표발의)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정홍범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2. 16.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정홍범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한 경우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조례상에 수수료 청구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청구기한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수료 청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조례 상호 간의 체계 정합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건축사 대행 수수료 청구 기한 등의 규정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제2항)
- 일조권 규정 상위 법령과의 정합관계 유지를 위해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화성시 건축 조례」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단서 부분을 삭제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 (현행)	「화성시 건축 조례」 (현행)
<p>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u>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u>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p>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할 경우 수수료 청구 기한 등에 관한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기한 등을 시장이 별도의 하부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항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검토 결과, 건축사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 기한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단서조항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외에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 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2. 16. 수정가결)

2. 제안요지설명(이재국 도시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입지기준 신설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곤충사육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및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강화(안 제18조의3 신설, 안 별표 14,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도로의 지정·공고 규정 삭제), 규제혁신추진단 추진과제(제조업소 수질기준 완화) 개정(안 제19조제1호).
-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제18조제1항제6호~7호, 별표 1, 별표 1의4).
-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개정(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입지기준 신설,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 동·식물 관련시설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 타법 개정 및 법령해석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 등이 있습니다.

○ 개정사항 검토 결과, 상수도 미설치지역에 대한 허가기준 완화로 관련 민원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성장관리계획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 용도지역상 입지 제한 규정 신설시 축사등에 대한 입지가 추가로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축사, 양잠, 양봉 등 축사로 분류되는 모든 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대비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 대비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전 (제출 원안)	수 정 후 (의회 수정가결안)
<p>[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4호 관련)</p> <p>1. (생략-변경사항 없음)</p> <p>2.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p> <p>가. ~ 아.(생략)</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p>	<p>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p>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7호 관련)

1. (생략-변경사항 없음)
2.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정한다.)

가. ~ 아.(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8호 관련)

2.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 ~ 카.(생 략)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0호 관련)

2.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2. 16. **의견채택**)

2. 제안요지설명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0,970	-	140,97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92,000	92,000	65.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2,108	감)69,530	12,578	8.9	
	생산녹지지역	58,862	감)22,470	36,392	25.8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상신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향남읍 상신리 산13-13번지 일원	-	증)140,970	140,970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 정함 (안 제1조)
- 기반시설 기금 조성 규정 정함(안 제4조)
- 기금의 존속기간 규정 정함(안 제5조)
- 기금의 용도 규정 정함(안 제6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3. 제안개요

- 건명: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결정
- 위치: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13-13번지 일원
- 면적: 140,970m²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92,000m²), 자연녹지지역(12,578m²), 생산녹지지역(36,392m²)
- 제안자: (주)젤존
- 토지이용계획
 - 주거용지: 92,000m²(공동주택용지: 92,000m²)
 - 기반시설용지: 48,970m²(도로: 25,861m², 공원: 11,275m², 녹지: 3,231m², 하천: 8,603m², 우수지(중복결정): 1,518m²)

4. 추진사항

- 2021.12.24.: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도시정책과-23397)
- 2023.06.0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결과 협약(화성시↔사업제안자)
- 2023.06.08.: 상신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제안서 접수
- 2023.06.19.: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23.08.28.: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반영 통보
- 2023.09.26.~ 10.13.: 주민의견청취(17일간)

5. 향후 추진계획

- 2024.02.: 시의회 의견 청취
- 2024.0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09.: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
- 2024.10.: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산13-1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6만9천5백3십 제곱미터와 생산녹지지역 2만2천4백7십 제곱미터 총 9만2천 제곱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주거 용지로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 4만8천9백7십 제곱미터를 기반시설용지로 하여 총 1십4만9백7십 제곱미터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1,54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 향남읍 상신리 일대는 향남2지구와 연결해 있고 상신지구가 형성 중에 있는 등 최근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라. 토지이용계획상 하길천 중류부가 구역내 포함됨에 따라 하류부, 상류부에 대한 하천 정비 계획의 연계성과 개발에 따른 주변 농지 피해 방지대책, 국도 39호선과의 연결 계획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채택** (* 의견제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상신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 주변 개발계획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 개발지와 대상지 사이 제척지등 향후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접농지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 후 예상되는 주민요구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집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2. 2.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2. 5.

다. 상 정 일 자 :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4. 2. 16. **의견채택**)

2. 제안요지설명 (이재국 도시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계획 대상지인 장집리 일원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장안첨단산업단지 등 다수 산업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기존 향남도심의 인구수용을 분담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9,436	-	69,43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988	53,988	77.8	
생산녹지지역	25,219	감) 25,219	-	-	
자연녹지지역	44,217	감) 28,769	15,448	22.2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1	향남 장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향남읍 장짐리 336번지 일원	-	증)69,436	69,436	

다. 제안개요

- 건명: 장짐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 위치: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 336번지 일원
- 면적: 69,436m²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53,988m²), 자연녹지지역(15,448m²)
- 제안자: (주)청경
- 토지이용계획
 - 주거용지: 53,988m²(공동주택용지: 53,988m²)
 - 기반시설용지: 15,448m²(도로: 876m², 공원: 7,345m², 녹지: 7,22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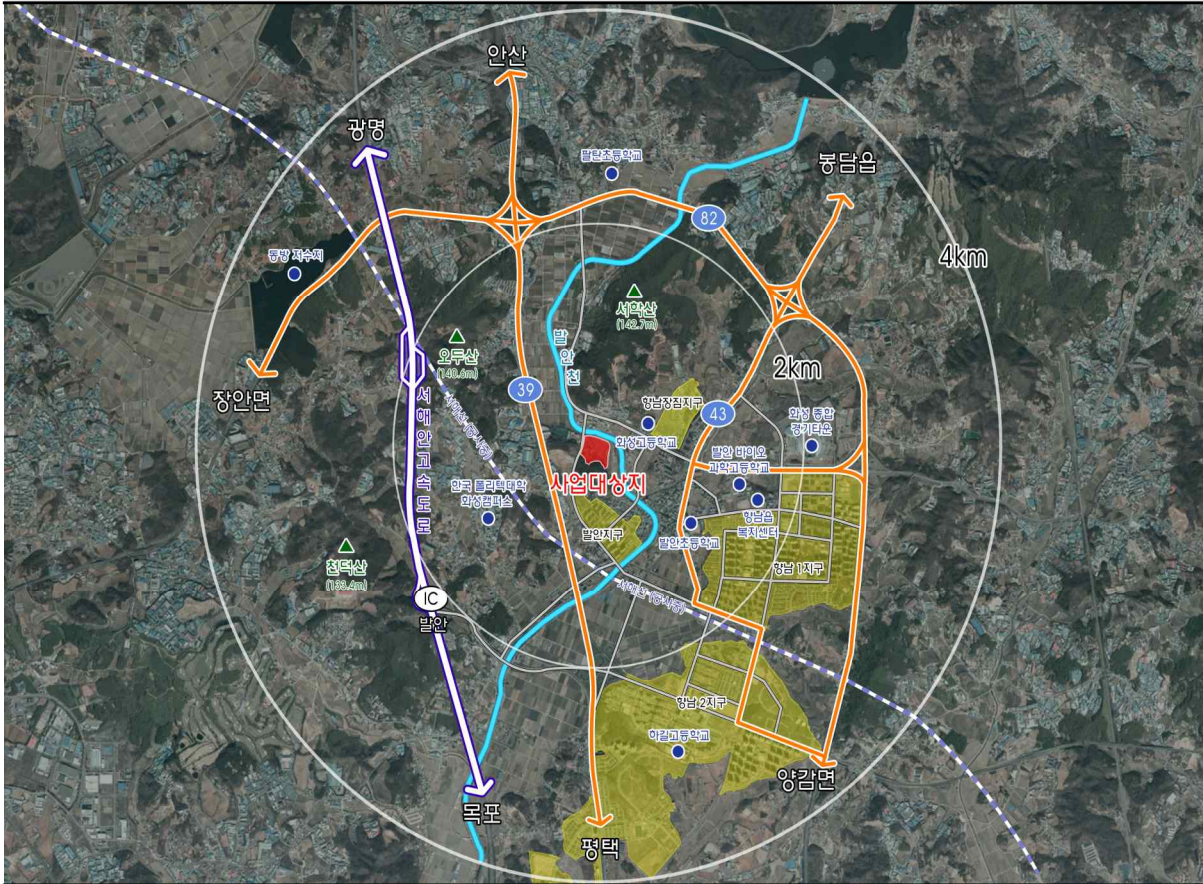
라. 추진사항

- 2022.01.27.: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도시정책과-1764)
- 2023.07.25.: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결과 협약(화성시↔사업제안자)
- 2023.07.26.: 장짐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제안서 접수
- 2023.08.11.: 관계부서(기관) 협의
- 2024.01.0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반영 통보

마. 향후 추진계획

- 2024.02.: 시의회 의견 청취
- 2024.04.: 주민의견청취
- 2024.0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10.: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
- 2024.11.: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위치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박만규 전문위원)

- 본 의견청취의 건은 화성시 향남읍 장침리 336번지 일원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 2만5천2백1십9 제곱미터와 자연녹지지역 2만8천7백6십9 제곱미터 총 5만3천9백8십8 제곱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주거용지로 도로, 공원, 녹지 등 1만5천4백4십8 제곱미터를 기반시설용지로 하여 총 6만9천4백3십6 제곱미터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96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항으로,
- 향남읍 장침리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향남 도심의 인구수용을 분담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 구역내 조성 예정인 공원과 음뿌리산 공원 조성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성, 발안천 제방 도로와 인접하여 주출입구가 개설될 경우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대로3-43호선 확포장과 관련하여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성, 부지 동측 발안천 수변공원과의 연결 방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채택** (* 의견제시 참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침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1.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주변도로에 대한 확포장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타 부서 추진사업(공원, 하천, 도로등)과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과 관련된 개발 이익이 우리시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 후 예상되는 주민요구사항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